

국 민 안 전 처

주 의 요 구

제 목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부실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내 용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는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계 획을 수립·시행 하는 것을 규정되어 있다.

1. 경상남도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부적정

경상남도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개인활동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주요 점검내용’으로 ‘음주운행 단속’과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 본청과 소속 전 15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등에는 음주측정 장비나 카메라 등 단속 및 안전점검 장비가 없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본청과 소속 전 15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등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및 경상남도의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음주단속 장비 미확보로 음주단속 실적은 전무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과속 등의 단속 필수장비인 카메라 등이 없어 형식적인 단속 활동에 그치는 등 수상레저 합동점검 및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 진주시장, 사천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의령군수, 함안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거창군수는

수상레저사업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합동점검이나 단속 업무시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여, 수상레저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점검(단속업무)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